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건본주택(<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 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1.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건본주택 방문은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홈페이지(<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하신분에 한하여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 건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홈페이지(<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 2.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출입자 명단 기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건본주택 방문을 자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53-244-100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3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5.1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1.05.13.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

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과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함)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 3 제5호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2020년 4월 17일 개정 시행)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 경북 거주자)	대구광역시 / 경북거주자			
일정	2022년 05월 23일(월)	2022년 05월 24일(화)	2022년 05월 25일(수)	2022년 05월 26일(목)	2022년 06월 02일(목)	2022년 06월 03일(금) ~ 2022년 06월 12일(일)	2022년 06월 14일(화) ~ 2022년 06월 16일(목)
방법 (일시)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구비서류 등을 지참 ■ 구비서류는 사업주체 홈페이지 참고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8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25477호(2022.05.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8길 11-9(파동)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15층, 17개동 총 755세대
 [특별공급 289세대(일반[기관추천] 52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107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287	01	074.9485	74	74.9485	24.1270	99.0755	49.0766	148.1521	38.5493	18	1	1	3	-	1	6	12	2	
		02	077.0157	77	77.0157	25.9329	102.9486	50.4303	153.3789	39.6125	44	4	4	8	1	4	21	23	4	
		03	084.4174A	84A	84.4174	26.5445	110.9619	55.2769	166.2388	43.4196	144	144	14	14	28	4	14	74	70	13
		04	084.9610B	84B	84.9610	28.7096	113.6706	55.6329	169.3035	43.6992	196	196	19	19	39	5	19	101	95	19
		05	084.8995C	84C	84.8995	28.7384	113.6379	55.5926	169.2305	43.6675	131	131	13	13	26	3	13	68	63	15
		06	084.9594D	84D	84.9594	26.1159	111.0753	55.6318	166.7071	43.6983	16	16	1	1	3	-	1	6	10	3
		07	096.2524	96	96.2524	29.0923	125.3447	63.0265	188.3712	49.5068	48	48	-	4	-	1	-	5	43	5
		08	100.1967	100	100.1967	32.0314	132.2281	65.6093	197.8374	51.5355	10	10	-	1	-	-	-	1	9	1
		09	101.8056	101	101.8056	32.6690	134.4746	66.6628	201.1374	52.3631	7	7	-	-	-	-	-	-	7	3
		10	110.8207	110	110.8207	33.4768	144.2975	72.5659	216.8634	56.9999	36	36	-	3	-	1	-	4	32	3
		11	112.9143B	112B	112.9143	40.9053	153.8196	73.9368	227.7564	58.0768	1	1	-	-	-	-	-	-	1	-
		12	112.6000C	112C	112.6000	40.9349	153.5349	73.7311	227.2660	57.9151	5	5	-	-	-	-	-	-	5	-
		13	114.9601	114	114.9601	36.7497	151.7098	75.2764	226.9862	59.1290	27	27	-	2	-	-	-	2	25	3
		14	130.4967	130	130.4967	39.1277	169.6244	85.4499	255.0743	67.1202	13	13	-	1	-	-	-	1	12	1
		15	142.9195B	142B	142.9195	50.4682	193.3877	93.5845	286.9722	73.5097	1	1	-	-	-	-	-	-	1	-
		16	142.5867C	142C	142.5867	50.9683	193.5550	93.3666	286.9216	73.3386	6	6	-	-	-	-	-	-	6	-
		17	155.7857	155	155.7857	49.6840	205.4697	102.0093	307.4790	80.1274	17	17	-	-	-	-	-	-	17	-
		18	157.9370	157	157.9370	55.3698	213.3068	103.4180	316.7248	81.2339	15	15	-	-	-	-	-	-	15	-
		19	160.6910	160	160.6910	55.4189	216.1099	105.2213	321.3312	82.6504	18	18	-	-	-	-	-	-	18	-
		20	188.0502	188	188.0502	56.9226	244.9728	123.1363	368.1091	96.7224	1	1	-	-	-	-	-	-	1	-
		21	206.3799	206	206.3799	65.9918	272.3717	135.1387	407.5104	106.1502	1	1	-	-	-	-	-	-	1	-
합 계											755	52	63	107	15	52	289	466	72	

142B	1	9	1	497,636,617	462,051,875	46,201,508	1,005,890,000	10,000,000	9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100,589,000	301,767,000
142C	6	5~12	6	498,067,026	462,451,506	46,241,468	1,006,760,000	10,000,000	9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100,676,000	302,028,000
155	17	1	17	528,764,092	490,878,098	49,087,810	1,068,730,000	10,000,000	9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106,873,000	320,619,000
157	15	1	15	548,930,480	509,599,563	50,959,957	1,109,490,000	10,000,000	10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110,949,000	332,847,000
160	18	1	18	556,144,071	516,296,299	51,629,630	1,124,070,000	10,000,000	10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112,407,000	337,221,000
188	1	10	1	906,611,759	841,652,946	84,165,295	1,832,430,000	10,000,000	17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183,243,000	549,729,000
206	1	10	1	981,310,516	910,999,530	91,099,954	1,983,410,000	10,000,000	18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198,341,000	595,023,00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대지지분은 세대별 주택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지적확정측량 등의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한 면적 및 대지지분과 등기상의 면적 및 대지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74.9485	077.0157	084.4174A	084.9610B	084.8995C	084.9594D	096.2524	100.1967	101.8056	110.8207	112.9143B	112.6000C	114.9601	130.4967	142.9195B	142.5867C	155.7857	157.9370	160.6910	188.0502	206.3799
약식표기	74	77	84A	84B	84C	84D	96	100	101	110	112B	112C	114	130	142B	142C	155	157	160	188	206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모델하우스 및 각종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중도금 대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02.0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예정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별도 비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 아파트 84타입의 경우 기존 승인 설계도서상 84A, 84A-1, 84B, 84C로 되어 있으나, 한국부동산원 주택형 표기 규정에 따라 84A-1 → 84D로 변경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함.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74	77	84A	84B	84C	84D	96	100	101	110	112B	112C	114	130	142B	142C	155	157	160	188	206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	1	2	3	4	1	-	-	-	-	-	-	-	-	-	-	-	-	-	-	-	11
	국가유공자	1	-	3	4	3	-	-	-	-	-	-	-	-	-	-	-	-	-	-	-	-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3	4	2	-	-	-	-	-	-	-	-	-	-	-	-	-	-	-	-	1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1	3	4	2	-	-	-	-	-	-	-	-	-	-	-	-	-	-	-	-	10
	중소기업 근로자	-	1	3	4	2	-	-	-	-	-	-	-	-	-	-	-	-	-	-	-	-	10
다자녀 특별공급	1	4	14	19	13	1	4	1	-	3	-	-	2	1	-	-	-	-	-	-	-	-	63
신혼부부 특별공급	3	8	28	39	26	3	-	-	-	-	-	-	-	-	-	-	-	-	-	-	-	-	10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4	5	3	-	1	-	-	1	-	-	-	-	-	-	-	-	-	-	-	-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1	4	14	19	13	1	-	-	-	-	-	-	-	-	-	-	-	-	-	-	-	-	52
합 계	6	21	74	101	68	6	5	1	-	4	-	-	2	1	-	-	-	-	-	-	-	-	28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의 10%이내) : 5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 (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이내) : 10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7,450,721원	7,200,810원~8,640,971원	7,326,073원~8,791,286원	7,779,826원~9,335,790원	8,233,579원~9,880,294원	8,687,332원~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8,692,508원	7,200,810원~10,081,133원	7,326,073원~10,256,501원	7,779,826원~10,891,755원	8,233,579원~11,527,009원	8,687,332원~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9,934,294원	8,640,972원~11,521,294원	8,791,287원~11,721,715원	9,335,791원~12,447,720원	9,880,295원~13,173,725원	10,424,798원~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 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직장가입자만해당)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않는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보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단,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금산정용내역확인서를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원본(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 발급받지 못할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내역확인서 함께 제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비치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5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입증 증빙서류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지 제 2020-703호(2020.09.29.)에 따른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	- 해당직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복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직장가입자만해당)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않는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보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단,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금산정용내역확인서를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원본(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 발급받지 못할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내역확인서 함께 제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비치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2021.05.1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1순위	전용 85㎡이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100%) -가점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p>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전용 85㎡초과	<p>•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p> <p>-가점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p> <p>-추첨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p> <p>※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불가</p> <p>※ 가점제(50%) / 추첨제(5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p> <p>※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p>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p> <p>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한정)</p>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p> <p>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p> <p>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p>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p>•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 청약 가능)</p> <p>- 세대주가 아닌자</p> <p>-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p> <p>-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p> <p>-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p>	
		2순위	<p>전 주택형</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p> <p>• 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p> <p>•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p> <p>청약제한 대상자</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p>	
<p>※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p> <p>※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p> <p>※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p> <p>-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p> <p>-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p> <p>-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p>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p>[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p>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 또는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p>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4항 및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p>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p>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 또는 동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2022.05.23. (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8)
일반공급	1순위	2022년 05월 24일(화)~05월 25일(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년 05월 26일(목)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최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V.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등·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년 06월 02일(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년 06월 14일(화) ~ 2022년 06월 16일(목)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8)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p>[추첨제 우선공급]</p> <p>※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공통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모바일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6.02 (목) ~ 2022.06.11 (토)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6.02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분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정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6.03(금) ~ 2022.06.12(일)(10:00~17:00) - 접수방법 : 건본주택 접수 - 장소 : 건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6.14(화) ~ 2022.06.16(목)(10:00~17:00) - 장소 : 건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8)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 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특별공급신청서의 경우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계약불가※본인발급분에한해가능하며,대리발급분은절대불가함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건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다자녀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외 불가,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가능해야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및19세이상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세대원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및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표1]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출생관련 증명서	자녀	출생관련일자확인필요시
		○	임신증명서류또는출산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경우임신증명서류(임신의경우임신진단서외불가,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가능해야함)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경우(건본주택에비치)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비사업자의경우(건본주택에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및세대원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본인과세대구성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없는경우에는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만19세이상세대원	만30세이상미혼의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및만19세이상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혼인신고일확인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하여"상세"로발급만18세이상의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표1]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세납부	본인	청약신청자의소득세납부인증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증빙서류]참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본인과세대구성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없는경우에는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이상미혼의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피부양직계존속을계속하여3년이상부양기간이주민등록표등본상에확인되지않는경우(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포함하여'상세'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피부양직계존속과의관계가확인되지않는경우,피부양직계존속이배우자가없거나배우자와세대분리된경우(성명 및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상세'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이전기혼자가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만18세이상의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상세"로발급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구분	서류유형		계약시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니다.) ※본인발급분에한해가능하며,대리발급분은절대불가함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사본1부(또는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사본1부(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부)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성인인 자녀의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함)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으로서입주자저축에24개월이상가입하고그가거주하는지역과다른주택건설지역의주택을공급받으려는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계약위임용1통,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바랍 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또는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로 확인한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함)로 선정을 제한함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의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이후 청약통장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매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 또는 동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393301-04-081010	아시아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와 및 시공사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 또는 불가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금(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위탁자 (주)수성의숲이 대납하되, 실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대납 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1차,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기타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사업주체,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앞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 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임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타입별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원, VAT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27,000,000		2,700,000		24,300,000
77	28,000,000		2,800,000		25,200,000
84A	30,000,000		3,000,000		27,000,000
84B	30,000,000		3,000,000		27,000,000
84C	30,000,000		3,000,000		27,000,000
84D	30,000,000		3,000,000		27,000,000
96	34,000,000		3,400,000		30,600,000

100	36,000,000	3,600,000	32,400,000
101	36,000,000	3,600,000	32,400,000
110	39,000,000	3,900,000	35,100,000
112B	42,000,000	4,200,000	37,800,000
112C	42,000,000	4,200,000	37,800,000
114	41,000,000	4,100,000	36,900,000
130	46,000,000	4,600,000	41,400,000
142B	53,000,000	5,300,000	47,700,000
142C	53,000,000	5,300,000	47,700,000
155	56,000,000	5,600,000	50,400,000
157	58,000,000	5,800,000	52,200,000
160	59,000,000	5,900,000	53,100,000
188	67,000,000	6,700,000	60,300,000
206	74,000,000	7,400,000	66,6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합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
- 발코니 확장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추가설치품목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으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기본품목 가격을 감한 금액이며, 발코니사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시 변동되는 내용은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추가설치품목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품질, 품귀 등으로 추가 설치품목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의무는 계약자(입주자 및 승계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의 추가 설치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형태, 세대간 마감 및 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통기관 및 통기관 박스, 벽체 환기캡, 실외기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냉매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테라스에는 수전이 1개소 설치되며, 설치 위치, 높이 및 형태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되는 외부에 면한 발코니창호(콘크리트 높은턱 위치 제외)는 수밀성 및 기밀성, 단열 강화를 위해 제품의 형태 및 사양, 규격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현관 중문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84A, 84B, 84D, 96, 110, 112B, 112C, 114, 130, 142B, 142C, 155, 157, 160, 188, 206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전동)	2,346,300	234,630	2,111,670
77, 84C, 100	원 슬라이딩 도어 (전동)	1,603,800	160,380	1,443,420
101	스윙 도어 (수동)	1,905,200	190,520	1,714,680

※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건립타입 84B 기준 : 74, 84A, 84B, 84D (3연동 슬라이딩 도어) 77, 84C (원 슬라이딩 도어)

96 기준 : 110, 114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00 (원 슬라이딩 도어) 101(스윙 도어)

142C 기준 : 112B, 112C, 115, 130, 142B, 157, 160, 188, 206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현관 중문 선택시 101타입은 스윙도어(수동형)가 설치 됩니다.

※ 현관 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세기로 중문 개폐 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옵션 선택시 디딤판의 위치 및 가구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도어의 개폐방식은 현관 위치에서 센서형으로 개폐되며, 거실(복도) 위치에서 버튼형으로 개폐됩니다. 센서 또는 버튼형의 개폐방식을 임의로 수정 요청 하실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복도 디자인월 패널 (도배마감 → 디자인월 패널) 변경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96, 100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514,700	151,470	1,363,230
77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724,800	172,480	1,552,320
84A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428,900	142,890	1,286,010
84B, 84C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488,300	148,830	1,339,470
84D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355,200	135,520	1,219,680
101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338,700	133,870	1,204,830
110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2,282,500	228,250	2,054,250
112B, 112C	벽체마감 (상·하부층 복도벽면+계단실벽면)	디자인월	3,925,900	392,590	3,533,310
114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507,000	150,700	1,356,300
130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445,400	144,540	1,300,860
142B, 142C	벽체마감 (상·하부층 복도벽면+계단실벽면)	디자인월	5,190,900	519,090	4,671,810
155	벽체마감 (상·하부층 복도벽면+계단실벽면)	디자인월	4,622,200	462,220	4,159,980
157	벽체마감 (상·하부층 복도벽면+계단실벽면)	디자인월	4,947,800	494,780	4,453,020
160	벽체마감 (상·하부층 복도벽면+계단실벽면)	디자인월	5,326,200	532,620	4,793,580
188	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1,621,400	162,140	1,459,260
206	1벽체마감(복도벽면)	디자인월	2,541,000	254,100	2,286,900

※ 디자인월 패널 미 선택 시 벽면은 거실 도배지 및 걸레받이가 시공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디자인월 패널은 랜덤패턴으로 시공되며,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패널 시공시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디자인월 패널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디자인월 패널의 나누기는 기본 생산 사이즈보다 크게 설치할 수 없으며, 코너부위에는 PVC 몰딩이 설치됩니다.

※ 디자인월 패널 시공시 고정용 핀 자국이 발생하며, 육안으로 노출되어 집니다.

※ 본 공사시 디자인월의 메지는 육안으로 과도하게 노출 될 수 있으며, 노출되는 측면은 자재 특성상 별도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타입별로 디자인 패널 시공 부위 및 디자인, 면적은 다르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복층세대 상부층 및 하부층에 추가 옵션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주방공간의 디자인월 패널은 별도의 옵션(세컨더리 키친)으로 설치 될 예정으로 설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바닥 마감 변경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2,178,000	217,800	1,960,200	
77			2,238,500	223,850	2,014,650	
84A			2,635,600	263,560	2,372,040	
84B			2,750,000	275,000	2,475,000	
84C			2,621,300	262,130	2,359,170	
84D			2,832,500	283,250	2,549,250	
96			3,272,500	327,250	2,945,250	
100			3,583,800	358,380	3,225,420	
101			2,270,400	227,040	2,043,360	
110			3,424,300	342,430	3,081,870	
114			3,473,800	347,380	3,126,420	
112B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4,032,600	403,260	3,629,34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24,686,200	2,468,620	22,217,580
112C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3,724,600	372,460	3,352,14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24,244,000	2,424,400	21,819,600
130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3,974,300	397,430	3,576,87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26,471,500	2,647,150	23,824,350
142B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5,823,400	582,340	5,241,06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30,402,900	3,040,290	27,362,610
142C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6,081,900	608,190	5,473,71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32,092,500	3,209,250	28,883,250
155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6,084,100	608,410	5,475,69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31,422,600	3,142,260	28,280,340
157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6,178,700	617,870	5,560,83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31,739,400	3,173,940	28,565,460
160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6,277,700	627,770	5,649,93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32,151,900	3,215,190	28,936,710
188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6,144,600	614,460	5,530,14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46,455,200	4,645,520	41,809,680
206	선택 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 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	41,880,300	4,188,030	37,692,270
96, 100, 101			3,025,000	302,500	2,722,500	
112B			4,692,600	469,260	4,223,340	
112C			4,610,100	461,010	4,149,090	
142B			5,297,600	529,760	4,767,840	
142C			5,853,100	585,310	5,267,790	
155			3,539,800	353,980	3,185,820	
157			3,711,400	371,140	3,340,260	
160			3,792,800	379,280	3,413,520	
188			5,239,300	523,930	4,715,370	
206			6,768,300	676,830	6,091,470	

※ 바닥 타일, 천연석 바닥의 표면은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및 원목 마루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나누기는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142C 타입은 원활한 관리를 위해 원목마루 + 타일을 시공해 드렸으며, **선택1** 거실, 주방 바닥 (강마루 → 고급 타일) **선택2** 거실, 주방, 침실 바닥 (강마루 → 원목 마루)는 중복 선택 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 바닥 선택시 시공되는 고급 천연석은 자체 특성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벽체) 변경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77, 84A, 84B, 84C, 84D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벽	2,050,400	205,040	1,845,360
96, 100		2,168,100	216,810	1,951,290
101		1,659,900	165,990	1,493,910
110		2,117,500	211,750	1,905,750
112B, 112C, 142B, 155, 157, 160		8,913,300	891,330	8,021,970
114		2,154,900	215,490	1,939,410
130		2,348,500	234,850	2,113,650
142C		8,556,900	855,690	7,701,210
188		2,278,100	227,810	2,050,290
206		2,333,100	233,310	2,099,790

※ 유상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Italy Ceramics Panel은 본 공사시 랜덤패턴으로 시공되며,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Italy Ceramics Panel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Italy Ceramics Panel의 수직도 및 바탕면 평활도를 위해 패널 바탕면에 하지 철물 또는 판재가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마감 두께가 견본 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편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메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위첸 무드 라이팅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77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001,900	300,190	2,701,710	
	주방					4면 간접조명
	침실					디밍 시스템
84A, 84B, 84C, 84D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062,400	306,240	2,756,160	
	주방					4면 간접조명
	침실					디밍 시스템
96,100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263,700	326,370	2,937,33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침실					디밍 시스템
101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243,900	324,390	2,919,51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침실					디밍 시스템
110, 112B, 112C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393,500	339,350	3,054,15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침실					디밍 시스템
114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382,500	338,250	3,044,25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침실					디밍 시스템
130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403,400	340,340	3,063,06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침실					디밍 시스템
142B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5,920,200	592,020	5,328,18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가족실					우물천장+4면 간접조명
	침실					디밍 시스템

142C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6,054,400	605,440	5,448,96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가족실	우물천장+4면 간접조명				
	침실	디밍 시스템				
155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5,956,500	595,650	5,360,85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가족실	우물천장+4면 간접조명				
	침실	디밍 시스템				
157, 160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5,934,500	593,450	5,341,05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가족실	우물천장+4면 간접조명				
	침실	디밍 시스템				
188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3,800,500	380,050	3,420,45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침실	디밍 시스템				
206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 간접조명		4,138,200	413,820	3,724,380
	주방	4면 간접조명 + 흡음판넬				
	침실	디밍 시스템				
전 주택형	주방	식탁 팬던트 조명	선택1. Line 타입	442,200	44,220	397,980
			선택2. Circle 타입	442,200	44,220	397,980
74	침실1 (안방)	우물천장+1면 간접조명		565,400	56,540	508,860
77, 84B, 84C, 100, 112B, 112C, 142B, 142C				590,700	59,070	531,630
84A, 84D, 96, 101, 155, 157, 160, 188				603,900	60,390	543,510
110				746,900	74,690	672,210
114				733,700	73,370	660,330
130				702,900	70,290	632,610
206				561,000	56,100	504,9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간접등이 설치되지 않는 구간의 조명설치 공간은 별도로 시공되지 않으며 단천장으로 설치 됩니다.

※ 거실 등기구에 적용되는 디밍 기능은 기본제공 품목으로 유상옵션 선택 시 각 침실등에 추가 설치품목에 대한 증액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포인트 흡음판넬은 96~206 타입에 적용되며, 미선택 시 천장지로 시공됩니다.

※ 식탁 팬던트 조명 및 침실1(안방) 1면 간접조명 옵션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식탁 팬던트 조명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각 타입별 아일랜드등이 기본으로 설치 됩니다.

※ 복층 타입의 경우 팬던트 조명 옵션 선택시 1개소만 설치됩니다.

※ 타입별 우물천장의 크기와 형태 및 디자인이 상이하므로 간접조명, 포인트 흡음판넬의 설치구간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간접조명은 디밍 및 조도 조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프리미엄 키친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6,518,600	651,860	5,866,74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77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5,852,000	585,200	5,266,80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84A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6,652,800	665,280	5,987,52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84B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7,251,200	725,120	6,526,08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84C, 84D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6,704,500	670,450	6,034,05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96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9,017,800	901,780	8,116,02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팬트리 → 팬트리 + 고급 유리 장식장			
100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9,276,300	927,630	8,348,67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01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6,958,600	695,860	6,262,74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110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7,045,500	704,550	6,340,95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112B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6,761,700	676,170	6,085,53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112C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6,559,300	655,930	5,903,37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114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10,073,800	1,007,380	9,066,42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30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12,246,300	1,224,630	11,021,67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42B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9,782,300	978,230	8,804,07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42C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7,781,400	778,140	7,003,26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55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8,639,400	863,940	7,775,46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57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8,336,900	833,690	7,503,21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60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10,549,000	1,054,900	9,494,10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188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8,404,000	840,400	7,563,60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206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MMA) → Italy Ceramic Panel	10,221,200	1,022,120	9,199,080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 Panel			
	주방 상부장	PET마감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주방 장식장	기본 수납장 → 고급 유리 장식장			

※ 유상옵션 미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은 소재, 형태, 개폐 방향, 크기, 디테일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의 내부 마감은 하부장과 동일한 소재,색상으로 설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설치되는 유리도어 플랩장은 타입별로 설치 위치, 사이즈 등이 상이하오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몸통 내부에는** 간접조명 안전기 설치를 위한 박스가 설치 되며, 본 공사시 위치, 크기,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가구 간접조명은 디밍조절이 가능한 컨트롤러를 무선(리모컨)으로 세대당 1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설치되는 간접조명은 **전체의 전원만 작동이 가능하며, 조명면을 나누어 작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고급 유리 장식장은 타입별로 설치유무, 크기,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 제품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 / 모델명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고급형 후드 (침니형 후드 → 고급형 후드)	하츠 / PSC-90S	679,800	67,980	611,820
	빌트인 전기 쿡탑 (3구 가스쿡탑 → 3구 인덕션)	삼성전자 / NZ63A8708XG	1,171,500	117,150	1,054,350
	고급형 빌트인 오븐 (수납장 → 고급형 오븐)	삼성전자 NQ36A6588CK (블랙) NQ36A6588CW (화이트)	737,000	73,700	663,3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전자 / DUB22SB2	1,207,800	120,780	1,087,020

	키친핏 냉장&냉동고&김치냉장고 (BESPOKE)	삼성전자 RZ34A7(9/8)95AP(냉장) + 코타패널 RR40A7(9/8)65AP(냉동) + 코타패널 RQ32R7645AP(김치냉장고) + 코타패널	4,954,400	495,440	4,458,960
	의류관리기	LG전자 / S3MFB	1,472,900	147,290	1,325,610
74, 77, 84A, 84B, 84C, 84D, 96, 100, 101, 110, 112B 112C, 114, 130, 188, 206	빌트인 와인냉장고	LG전자 / R-WZ46JKX	1,237,500	123,750	1,113,750

- ※ 가전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삼성전자 키친핏 비스포크 냉장&냉동고 + 삼성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오픈장이 설치되며, 삼성전자 키친핏 비스포크 냉장&냉동고 및 삼성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선택에 따라 가구의 형태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삼성전자 키친핏 비스포크 냉장&냉동고 선택 및 삼성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김치냉장고장의 크기가 다소 축소되어 일부 김치냉장고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전자 키친핏 비스포크 냉장&냉동고 선택 및 삼성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선택 시 페어키트가 설치되며, 키친핏 김치냉장고만 선택할 경우 별도의 페어키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 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의류관리기 선택 시 프리스텐딩 타입으로 별도의 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고급형 후드 유상옵션 미선택 시 침니형 후드(하츠 MSH-90S)가 설치됩니다.
- ※ 빌트인 전기 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SK매직 GRA-B300)가 설치됩니다.
- ※ 고급형 빌트인 오븐, 빌트인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 빌트인 와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가구도어가 설치되며, 142B, 142C, 155, 157, 160 타입은 세컨더리 키친 유상옵션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컨더리 키친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42B	주방가구	하부장(싱크볼/수전) + 조명형 금속 선반 + 키큰장 + 장식장 + 멀티데스크	18,799,000	1,879,900	16,919,100
	주방, 멀티데스크 상판 / 주방 벽체	Italy Ceramic Panel			
	가 전	렌지 후드+인덕션 2구+키친핏 냉장&냉동고+빌트인 와인 냉장고+센서식 절수 시스템			
	다이닝 공간 벽체 마감	디자인월 패널			
142C	주방가구	하부장(싱크볼/수전) + 조명형 금속 선반 + 키큰장 + 장식장 + 멀티데스크	17,756,200	1,775,620	15,980,580
	주방, 멀티데스크 상판 / 주방 벽체	Italy Ceramic Panel			
	가 전	렌지 후드+인덕션 2구+키친핏 냉장&냉동고+빌트인 와인 냉장고+센서식 절수 시스템			
	다이닝 공간 벽체 마감	디자인월 패널			
155	주방가구	하부장(싱크볼/수전) + 조명형 금속 선반 + 키큰장 + 장식장 + 멀티데스크	17,875,000	1,787,500	16,087,500
	주방, 멀티데스크 상판 / 주방 벽체	Italy Ceramic Panel			
	가 전	렌지 후드+인덕션 2구+키친핏 냉장&냉동고+빌트인 와인 냉장고+센서식 절수 시스템			
	다이닝 공간 벽체 마감	디자인월 패널			
157	주방가구	하부장(싱크볼/수전) + 조명형 금속 선반 + 키큰장 + 장식장 + 멀티데스크	17,686,900	1,768,690	15,918,210
	주방, 멀티데스크 상판 / 주방 벽체	Italy Ceramic Panel			
	가 전	렌지 후드+인덕션 2구+키친핏 냉장&냉동고+빌트인 와인 냉장고+센서식 절수 시스템			
	다이닝 공간 벽체 마감	디자인월 패널			
160	주방가구	하부장(싱크볼/수전) + 조명형 금속 선반 + 키큰장 + 장식장 + 멀티데스크	19,306,100	1,930,610	17,375,490
	주방, 멀티데스크 상판 / 주방 벽체	Italy Ceramic Panel			
	가 전	렌지 후드+인덕션 2구+키친핏 냉장&냉동고+빌트인 와인 냉장고+센서식 절수 시스템			
	다이닝 공간 벽체 마감	디자인월 패널			

※ 세컨더리 키친 유상옵션 미선택 시 벽 도배지가 시공된 가족실이 기본 제공되며, 운수 분배기 위치는 변경됩니다.

- ※ 세컨더리 키친 유상옵션 선택시 보이지 않는 가구 후면 마감 (벽, 천장, 바닥)은 생략됩니다.
- ※ 빌트인 주방가전은 옵션 선택시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77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4,526,500	452,650	4,073,850
84A, 84C, 84D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2,962,300	296,230	2,666,070
84B, 96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2,902,900	290,290	2,612,610
100, 142B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3,313,200	331,320	2,981,880
101, 114, 130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5,054,500	505,450	4,549,050
142C, 155, 157, 160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3,253,800	325,380	2,928,420
188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8,796,700	879,670	7,917,030
206	4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판넬형 시스템가구 + 간접조명	7,448,100	744,810	6,703,290

- ※ 타입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옵션 제공 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고급형 드레스룸 유상옵션 미선택 시 74, 77, 101, 114, 130, 188, 206 타입은 벽도배가 시공된 공간으로 제공되며, 84A, 84B, 84C, 84D, 96, 100, 142B, 142C, 155, 157, 160 타입은 건식벽체 + 가구도어 + 일반형 시스템가구가 제공됩니다.
- ※ 84A, 84B, 84C, 84D, 96, 100, 142B, 142C, 155, 157, 160 타입은 옵션 선택시 **추가 설치품목에 대한 증액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유상옵션 선택시 보이지 않는 가구 후면 마감은 생략됩니다.

■ 프리미엄 바스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5,959,800	595,980	5,363,82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77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5,902,600	590,260	5,312,34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84A, 84B, 84C, 84D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521,900	652,190	5,869,71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96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493,300	649,330	5,843,97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00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839,800	683,980	6,155,82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01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970,700	697,070	6,273,63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10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763,900	676,390	6,087,51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12B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669,300	666,930	6,002,37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12C	욕실1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6,856,300	685,630	6,170,670

	(공용욕실)	양변기	→ 수입 고급 타일(600*600)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14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943,200	694,320	6,248,88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30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6,888,200	688,820	6,199,38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42B, 142C, 157, 160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8,824,200	882,420	7,941,78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욕실3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155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8,836,300	883,630	7,952,67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욕실3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188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11,922,900	1,192,290	10,730,61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욕실3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206	욕실1 (공용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11,844,800	1,184,480	10,660,320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2 (부부욕실)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샤워수전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샤워 수전			
	욕실3	벽 / 바닥	일반 타일(벽_300*600, 바닥_300*300) → 수입 고급 타일(600*600)			
		은경	일반 은경 → 조명형 은경			
		양변기	투피스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 ※ 타입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옵션 제공 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선택시 보이지 않는 가구 후면, 바닥 마감은 생략됩니다.
- ※ 유상옵션 선택시 추가 설치품목에 대한 증액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유상옵션 선택 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수납 강화형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침실 2 붙박이장	696,300	69,630	626,670
	침실 3 붙박이장	1,005,400	100,540	904,860
77	침실 2 붙박이장	918,500	91,850	826,650
	침실 3 붙박이장	2,193,400	219,340	1,974,060
84A, 84D	침실 2 붙박이장	918,500	91,850	826,650
	침실 3 붙박이장	1,279,300	127,930	1,151,370
84B, 84C	침실 2 붙박이장	918,500	91,850	826,650
	침실 3 붙박이장	2,376,000	237,600	2,138,400
96	침실 2 붙박이장	927,300	92,730	834,570
	침실 3 붙박이장	1,325,500	132,550	1,192,950
100	침실 2 붙박이장	927,300	92,730	834,570
	침실 3 붙박이장	2,467,300	246,730	2,220,570
101	침실 2 붙박이장	1,273,800	127,380	1,146,420
	침실 3 붙박이장	1,325,500	132,550	1,192,950
110, 114	침실 2 붙박이장	1,228,700	122,870	1,105,830
	침실 3 붙박이장	1,235,300	123,530	1,111,770
112B, 142B	침실 2 붙박이장	2,295,700	229,570	2,066,130
	침실 3 붙박이장	2,305,600	230,560	2,075,040
112C	침실 2 시스템가구	724,900	72,490	652,410
	침실 3 시스템가구	797,500	79,750	717,750
130	침실 2 붙박이장	1,228,700	122,870	1,105,830
	침실 3 시스템가구	848,100	84,810	763,290
142C	침실 2 시스템가구	724,900	72,490	652,410
	침실 3 시스템가구	797,500	79,750	717,750
155	침실 2 붙박이장	1,228,700	122,870	1,105,830
	침실 3 붙박이장	2,478,300	247,830	2,230,470

	복도 팬트리	1,243,000	124,300	1,118,700
157	침실 2 불박이장	1,228,700	122,870	1,105,830
	침실 3 불박이장	2,182,400	218,240	1,964,160
	복도 팬트리	947,100	94,710	852,390
160	침실 2 불박이장	1,228,700	122,870	1,105,830
	침실 3 불박이장	2,301,200	230,120	2,071,080
	복도 팬트리	1,064,800	106,480	958,320
188	침실 2 불박이장	1,096,700	109,670	987,030
	침실 3 불박이장	1,057,100	105,710	951,390
206	침실 3 불박이장	1,057,100	105,710	951,390

- ※ 타입별로 옵션 제공 품목, 설치 위치, 사이즈, 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선택시 보이지 않는 가구 후면, 바닥 마감은 생략됩니다.
- ※ 유상옵션 선택 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전용 창고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77, 84A, 84B, 84C, 84D, 96, 100, 101 110, 112B, 112C, 114, 130, 142B, 142C 155, 157, 160, 188, 206	창고 도어 + 시스템 선반	1,461,900	146,190	1,315,710
112B, 112C, 142B, 142C	창고 도어 + 시스템 선반	2,922,700	292,270	2,630,430

- ※ 동호수 라인별로 설치 위치, 사이즈, 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112B, 112C, 142B, 142C 타입은 복층에 해당하는 세대 창고를 중복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세부사항	설치개수	설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선택1	거실+침실1	2대	3,107,500	310,750	2,796,75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3대	4,271,300	427,130	3,844,17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3대	4,271,300	427,130	3,844,17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5,758,500	575,850	5,182,650
77	선택1	거실+침실1	2대	3,107,500	310,750	2,796,75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3대	4,271,300	427,130	3,844,17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3대	4,271,300	427,130	3,844,17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5,758,500	575,850	5,182,650
84A	선택1	거실+침실1	2대	3,107,500	310,750	2,796,75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5,700,200	570,020	5,130,180
84B	선택1	거실+침실1	2대	3,107,500	310,750	2,796,75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5,861,900	586,190	5,275,710
84C	선택1	거실+침실1	2대	3,107,500	310,750	2,796,75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5,861,900	586,190	5,275,710
84D	선택1	거실+침실1	2대	3,107,500	310,750	2,796,75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3대	4,315,300	431,530	3,883,77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5,861,900	586,190	5,275,710
96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대	4,257,000	425,700	3,831,3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4대	5,287,700	528,770	4,758,93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3	4대	5,287,700	528,770	4,758,93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6,834,300	683,430	6,150,870
100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대	4,271,300	427,130	3,844,17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3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7,128,000	712,800	6,415,200
101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대	4,271,300	427,130	3,844,17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3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7,128,000	712,800	6,415,200
110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대	4,713,500	471,350	4,242,15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3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7,157,700	715,770	6,441,930
112B	선택1	거실1+주방+침실1	3대	5,670,500	567,050	5,103,450
	선택2	거실1+주방+침실1+침실2	4대	6,627,500	662,750	5,964,750
	선택3	거실1+주방+침실1+침실3	4대	6,627,500	662,750	5,964,750
	선택4	거실1+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7,510,800	751,080	6,759,720
112C	선택1	거실1+주방+침실1	3대	5,670,500	567,050	5,103,450
	선택2	거실1+주방+침실1+침실2	4대	6,627,500	662,750	5,964,750
	선택3	거실1+주방+침실1+침실3	4대	6,627,500	662,750	5,964,750
	선택4	거실1+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7,510,800	751,080	6,759,720
114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대	4,713,500	471,350	4,242,15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3	4대	5,729,900	572,990	5,156,91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7,157,700	715,770	6,441,930
130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대	4,727,800	472,780	4,255,02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	4대	5,788,200	578,820	5,209,380
	선택3	거실+주방+침실1+침실3	4대	5,744,200	574,420	5,169,780
	선택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7,157,700	715,770	6,441,930
142B	선택1	거실+주방+가족실+침실1	4대	6,627,500	662,750	5,964,750
	선택2	거실+주방+가족실+침실1+침실2	5대	8,688,900	868,890	7,820,010
	선택3	거실+주방+가족실+침실1+침실3	5대	7,658,200	765,820	6,892,380
	선택4	거실+주방+가족실+침실1+침실2+침실3	6대	10,235,500	1,023,550	9,211,950
142C	선택1	거실+주방+가족실+침실1	4대	6,627,500	662,750	5,964,750
	선택2	거실+주방+가족실+침실1+침실2	5대	8,688,900	868,890	7,820,010
	선택3	거실+주방+가족실+침실1+침실3	5대	7,658,200	765,820	6,892,380
	선택4	거실+주방+가족실+침실1+침실2+침실3	6대	10,235,500	1,023,550	9,211,950
155	선택1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	5대	7,438,200	743,820	6,694,380
	선택2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2	6대	8,688,900	868,890	7,820,010
	선택3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3	6대	8,688,900	868,890	7,820,010
	선택4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2+침실3	7대	11,046,200	1,104,620	9,941,580
157	선택1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	5대	7,438,200	743,820	6,694,380
	선택2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2	6대	9,131,100	913,110	8,217,990
	선택3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3	6대	9,131,100	913,110	8,217,990
	선택4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2+침실3	7대	11,561,000	1,156,100	10,404,900
160	선택1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	5대	7,438,200	743,820	6,694,380
	선택2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2	6대	9,131,100	913,110	8,217,990
	선택3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3	6대	9,131,100	913,110	8,217,990
	선택4	거실1+거실2+주방+가족실+침실1+침실2+침실3	7대	11,561,000	1,156,100	10,404,900

188	선택1	거실1+거실2+주방+침실1+드레스룸	5대	7,643,900	764,390	6,879,510
	선택2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2+드레스룸	6대	8,748,300	874,830	7,873,470
	선택3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3+드레스룸	6대	8,734,000	873,400	7,860,600
	선택4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드레스룸+알파룸	10대	13,402,400	1,340,240	12,062,160
206	선택1	거실1+거실2+주방+침실1+가족실	5대	7,378,800	737,880	6,640,920
	선택2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2+가족실	6대	8,969,400	896,940	8,072,460
	선택3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3+가족실	6대	8,644,900	864,490	7,780,410
	선택4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가족실+알파룸	10대	13,902,900	1,390,290	12,512,61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안방)만 기본으로 설치되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배관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위치는 시공상 간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기본제공(거실, 침실1(안방)) 품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등을 제외하며, 상기 금액은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 등에 대한 감액 부분과 추가 설치품목에 대한 증액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에어컨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기청정기 선택 시 필터 교환 주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조사(삼성전자) 안내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옵션 외 입주자가 별도 설치시 누수, 천장손상 등에 대한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홈 IOT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키트 미적용)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저하, 실외기 작동중단, 실외기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기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세부사항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74	선택1	거실+침실1	530,200	53,020	477,18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796,400	79,640	716,76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796,400	79,640	716,76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060,400	106,040	954,360
77	선택1	거실+침실1	530,200	53,020	477,18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796,400	79,640	716,76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796,400	79,640	716,76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060,400	106,040	954,360
84A	선택1	거실+침실1	530,200	53,020	477,18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796,400	79,640	716,76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796,400	79,640	716,76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060,400	106,040	954,360
84B	선택1	거실+침실1	530,200	53,020	477,18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796,400	79,640	716,76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796,400	79,640	716,76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060,400	106,040	954,360
84C	선택1	거실+침실1	530,200	53,020	477,18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796,400	79,640	716,760
	선택3	거실+침실1+침실3	796,400	79,640	716,760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060,400	106,040	954,360

206	선택1	거실1+거실2+주방+침실1+가족실	1,325,500	132,550	1,192,950
	선택2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2+가족실	1,590,600	159,060	1,431,540
	선택3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3+가족실	1,590,600	159,060	1,431,540
	선택4	거실1+거실2+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가족실+알파룸	2,651,000	265,100	2,385,900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제품으로(타사포함)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안방)) 및 에어컨용 콘센트(거실, 침실1(안방))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및 빌트인오븐 옵션 선택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 및 전기오븐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키친핏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선택시 설치 제품의 설치 위치 및 붙박이가구의 형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바닥타일 선택시 마루, 현관디딤판 등 바닥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후드 일체형 인덕션 쿡탑 선택 시 교체용 필터는 1개 추가 지급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아래 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옵션품목 납부계좌로 아파트 공급 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세대별 옵션품목비용(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옵션품목비용 납부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용 및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393301-04-081023	아시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393301-04-081036	아시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503호 홍길동 →101503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VII **유의사항**

- 학교 관련 사항
- 초등학교의 배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파동초등학교 증축 공사를 통한 학교시설 확보 시 적정배치 가능합니다.(교실7실 및 부대시설, 식당확장, 관리실 이전 재배치 등 공사 필요)
 - 유치원은 6권역(지산권) 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중학생은 2학교군(수성구) 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분양 자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

■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

- 단지내 103동, 104동 동측 보도는 보도폭을 동일하게 계획하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단지 사업구역 북측에 계획되어 있는 폭원 4m 동측 2m 내부보도, 남측 3m 내부보도, 서측 3m 내부보도는 준공 시 지자체에 무상점용 또는 사용권이 있으므로 입주민들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 및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필히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도면 등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중심부에 설치되는 사업부지 동측에서 서측으로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인근 주민 등 불특정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 및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필히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도면 등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0.3025 또는 형별면적(m²)÷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 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방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한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복층 세대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환, 태양광 집광판,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철도,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집합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집적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시공사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건축물 내에 엘리베이터 홀, 지붕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101동~115동은 각동에 설치되며 116동 및 117동은 통합1개소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위치 및 사이즈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할 예정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 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 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설치 예정위치 : 103동, 105동, 106동, 109동, 111동, 113동
-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 설치 예정위치 : 지하6층 110동 PIT, 114동 PIT / 지하3층 107동 공용PD, 108동 제연실 / 옥상층 : 103동, 105동, 106동, 109동, 111동, 113동
- 전기차충전설비는 급속기 5대, 완속기 16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유도 시스템은 CCTV카메라를 이용한 권역별 주차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음.
- 단지 내 방범, 보안,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압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일부 세대 제외)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도와 마감자재 목록표가 입주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 사항

-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일조권, 조망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무인택배 유지,주차유도관제 유지,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집합창고는 지하4층 110동 인근에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는 각동 지상1층 출입구 인근에 설치됩니다. 시설물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단지 내부에 6개소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저층세대의 소음, 악취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은 1층(일부동은 불가),2층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 단지 내 주차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산책로 등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재활용집합창고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곳곳에 쓰레기집적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상 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일부는 택배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천장고 2.7m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옥외에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 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 특화디자인은 분양 이후 KCC건설 내부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되어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

-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세대는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설치로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시설이 일부 동에 설치되며, 인접세대에는 냄새 등 환경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이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출입구 주변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인한 조망권 간섭, 소음 발생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안내된 규격은 확장형주차 규격입니다. 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5, 160, 157 타입 (하부복층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과 다소 상이할 수있으며, 건물입면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는 환경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디자인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엘리베이터홀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 주동 내 발코니 선흠통에서 우기시 빗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탑 및 옥상조형물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석재뿔칠,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됨.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옥상)에 설치됨.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동의 동 출입구는 케이씨건설회사 스위첸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1(휘트니스, G.X룸, 샤워시설), 골프연습장, 주민공동시설-2(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맘스테이션, 입주자회의실
-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가 설치되며, 야외운동기구 설치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달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련규약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케이씨건설회사 스위첸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분리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골프클럽 타석에 설치되는 스윙분석 시스템에 대한 특정 제품으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옥탑디자인은 공법, 현장여건, 마감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 디자인은 KCC건설 디자인 매뉴얼 2.0에 맞추어 최종 시공될 예정으로 건축심의 등 인허가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위치 및 용량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사항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홈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하고 추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실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보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옵션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추가선택옵션에 따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ئن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가전의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싱크대 내부 등 주방 가구 디자인은 온수분배기 설치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장, 침실 반침장, 안방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 견본주택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단위세대의 내부 단차부위(발코니, 욕실, 현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선택형 평면(유,무상)에 따라 가구,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천연석, 이태리세라믹패널(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세기로 중문 개폐 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중문 등 유리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 중문에는 모헤어 또는 가스켓이 설치되며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 바닥에는 각종 PD 공간의 환기를 위한 통기관및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테라스 공간 활용, 시선 및 소음, 냄새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통기관및 구조물의 형태 및 사이즈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기단부(1~2F) 마감은 석재(화강석)와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적용되며, 석재의 색상은 천연석의 특성상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자재 수급의 관계에 따라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의 테라스 공간 구획의 벽체는 본 공사 시 석재 뿔칠로시공될 예정으로,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확정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층 데크층의마감은 석재 뿔칠,포인트 면은 석재 및 큐블럭타일 등으로 시공될 예정으로 적용 면적 및 디자인 등은 단지 모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적용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장비가 발코니2(세탁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일부 타입의 경우 천정에 환기덕트 및 배관커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_스탠드형, 안방_벽걸이형 총 2개소가 기본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일부 세대 제외)이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본공사시 사양 및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주방 벽면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가스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및 주방 상부장, 아일랜드 식탁의 쿡탑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 및 배관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직배기시스템, 욕실 직배기 시스템 적용으로 인해 인접세대에서 창문 개방 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침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 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월패드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후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 및 타입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사시는 창호도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창호종류 및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선홍통 등)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측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다용도실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비확장 발코니의 외부측 벽체 및 천정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면적이 축소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없으나,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벽체의 경우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조인트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각줄눈 시공 후 실란트 마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용부의 창호는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는 성능향상을 위해 사양, 크기, 디자인,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승인도서(변경포함)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주방 벽면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가스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및 주방 상부장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직접외기로 우수 드레인의 동파방지를 위해 봉수가 되지 않는 배수 드레인이 설치될 예정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또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1개소와 침실1(안방) 1개소가 시공되며, 유상옵선 선택시 거실과 안방에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월패드 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주방에 설치된 거치형패드의 제어 기능은 세대 와이파이 연결 시 가능하며, 해상도, 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디자인 및 형태 등이 다소 변경 될 예정입니다.
- 전기쿠폰 전원은 전용회로(20A 차단기)로 시공되어지나, 자동전력제어 기능이 없는 제품(고용량, 해외제작 외) 사용시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제공하는 홈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 (조명, 난방제어 등) 외 IoT 연동 제품은 (공기청정기, 스피커, 가습기, 무선AP, 에어컨, 기타 등)은 소비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기 제어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통신 및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 조건은사용자와 KT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홈 IoT 전용앱은 입주시 KT 측에서 다운로드 및 사용법 안내 예정이며, 전용앱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3년 이후에는 유상서비스로 변경 예정입니다(사용자 선택 가능)
- 주방에 설치된 거치형패드는 타입별 디자인 및 사양,위치가 다르며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사양, 위치는 변경예정입니다.
- 아트월 에 시공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은 북매칭 타입으로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및 주방 벽체에 설치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세라믹 판넬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아트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은 커튼박스 시작 수직라인까지 시공되며 측면 마감을 위해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및 벽체에 적용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의 디자인은 자재의 커팅 방법, 제조 시점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되며, 타일의 베인의 방향이 랜덤하게 시공됨을 인지하고 이에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설치 되는 안전접합 유리난간 적용 PVC발코니 창호의 난간 높이는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및 본공사 시공 예정으로 난간대 높이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비상 시 탈출할 수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며, 탈출형 대피시설은 야외에 직접 노출되는 형태로 탈출공간에 별도의 야적을 할 수 없습니다.
- 탈출형 대피시설은 외부면으로 벽체가 설치되지 않고 금속 난간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난간의 높이, 재질, 형태, 사양 등은 추후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탈출형 대피시설 바닥은 피난 사다리공간은 금속판으로 시공되며 , 그 외 바닥은 타일로 시공될 예정으로 타일의 사양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규격 사항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주방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 제공/전시품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지붕모양,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에 표시된 단지 주변 현황 및 당 사업장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과장 및 개략적으로 표현해 실제 현황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단열도어는 성능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경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인접동에 의해서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 등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주차장 램프 포함), 보행자에 의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는 세대별로 가로등, 보안등, 정원등, 수목투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주변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시설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설비관련실(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환풍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조명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 주차장 진출입구 및 주차장은 각각 분리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쓰레기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수거차량 상시 접근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차후 여하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시설물(문주, DA, 쓰레기집적소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색채, 축벽,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 및 식재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와 색상 및 외부창호 색상과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환경 사항**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단지 동서측 도로 및 건물은 향후 개발 예정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진행 및 설계,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각 1개소에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 설치위치: 세대 및 공용부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수정 포레스트 스위트 2. 신 청 자: 아시아인학㈜ 3.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18-118번지 외 284필지 4. 성 능 등 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경향승격률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량승격률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상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반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해당없음</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차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보조확보율</td><td>★★</td></tr> <tr><td>13. 홈네트워킹 통합시스템</td><td>★</td></tr> <tr><td>14. 방범안전 콘텐츠</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td><td>해당없음</td></tr> <tr><td>3. 공기질 열상분할 최소화</td><td>해당없음</td></tr> <tr><td>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해당없음</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해당없음</td></tr> <tr><td>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해당없음</td></tr> <tr><td>9. 모은물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td><td>★</td></tr> <tr><td>10. 환경성신원 제품(EPI)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저탄소량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차단 장치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해당없음</td></tr> <tr><td>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td><td>★★★★</td></tr> <tr><td>16. 방음관리</td><td>해당없음</td></tr> <tr><td>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td><td>★★★★</td></tr> <tr><td>18. 절수형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04월 21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승격률 차단성능	★★★★	2. 중량승격률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반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해당없음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보조확보율	★★	13. 홈네트워킹 통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공기질 열상분할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모은물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신원 제품(EPI)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량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차단 장치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방음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평가]</p> <p>종합등급 ☆☆☆</p> <table border="1"> <tr><th>분야</th><th>비율</th></tr> <tr><td>토지이용 및 교통</td><td>27%</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영역</td><td>56%</td></tr> <tr><td>재료 및 자원</td><td>39%</td></tr> <tr><td>물순환관리</td><td>51%</td></tr> <tr><td>유지관리</td><td>96%</td></tr> <tr><td>생태환경</td><td>7%</td></tr> <tr><td>실내환경</td><td>67%</td></tr> </table> <p>2022년 4월 21일</p> <p>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분야	비율	토지이용 및 교통	27%	에너지 및 환경영역	56%	재료 및 자원	39%	물순환관리	51%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7%	실내환경	67%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개요: 공동주택 건축공사, 20240531, 대구 수성구 파동 118-118, 145471.4744㎡, 2022.4.21. ~ 사용승인일</p> <p>인증 개요: 인증번호: 22-주-제-14-0038, 평가자: 이승환,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145471.4744㎡, 인증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도시21</p> <p>인증 등급: 인증 등급: 14등급</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에너지요구량 (kWh/m²·년)</th><th>에너지소비량 (kWh/m²·년)</th><th>등급</th><th>CO2 배출량 (kg/m²·년)</th><th>비율</th></tr> <tr><td>에너지 제0등급 건축물</td><td>0</td><td>0</td><td>0</td><td>0</td><td>0.0</td></tr> <tr><td>에너지 제1등급 건축물</td><td>0</td><td>54.5</td><td>42.1</td><td>11.3</td><td>26.1</td></tr> <tr><td>에너지 제2등급 건축물</td><td>0</td><td>30.7</td><td>26.1</td><td>7.2</td><td>30.7</td></tr> <tr><td>에너지 제3등급 건축물</td><td>0</td><td>6.2</td><td>5.9</td><td>16.3</td><td>2.8</td></tr> <tr><td>에너지 제4등급 건축물</td><td>0</td><td>3.2</td><td>8.9</td><td>1.5</td><td>6.2</td></tr> <tr><td>에너지 제5등급 건축물</td><td>0</td><td>98.9</td><td>93.4</td><td>22.8</td><td>0.0</td></tr> </table> <p>에너지 성능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th><th>1차 에너지소비량 (kWh/m²·년)</th><th>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년)</th></tr> <tr><td>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td><td>26.1</td><td>54.5</td><td>42.1</td><td>11.3</td></tr> <tr><td>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td><td>30.7</td><td>35.3</td><td>26.1</td><td>7.2</td></tr> <tr><td>단위면적당 CO2 배출량</td><td>6.2</td><td>5.9</td><td>16.3</td><td>2.8</td></tr> <tr><td>평가</td><td>3.2</td><td>8.9</td><td>1.5</td><td>1.5</td></tr> <tr><td>등급</td><td>0.0</td><td>98.9</td><td>93.4</td><td>22.8</td></tr> </table>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04월 16일</p> <p>한국부동산원</p>	구분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등급	CO2 배출량 (kg/m²·년)	비율	에너지 제0등급 건축물	0	0	0	0	0.0	에너지 제1등급 건축물	0	54.5	42.1	11.3	26.1	에너지 제2등급 건축물	0	30.7	26.1	7.2	30.7	에너지 제3등급 건축물	0	6.2	5.9	16.3	2.8	에너지 제4등급 건축물	0	3.2	8.9	1.5	6.2	에너지 제5등급 건축물	0	98.9	93.4	22.8	0.0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0.0	0.0	0.0	0.0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26.1	54.5	42.1	11.3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0.7	35.3	26.1	7.2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6.2	5.9	16.3	2.8	평가	3.2	8.9	1.5	1.5	등급	0.0	98.9	93.4	22.8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승격률 차단성능	★★★★																																																																																																																																																																																										
2. 중량승격률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반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해당없음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보조확보율	★★																																																																																																																																																																																										
13. 홈네트워킹 통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공기질 열상분할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모은물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신원 제품(EPI)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량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차단 장치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방음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분야	비율																																																																																																																																																																																										
토지이용 및 교통	27%																																																																																																																																																																																										
에너지 및 환경영역	56%																																																																																																																																																																																										
재료 및 자원	39%																																																																																																																																																																																										
물순환관리	51%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7%																																																																																																																																																																																										
실내환경	67%																																																																																																																																																																																										
구분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등급	CO2 배출량 (kg/m²·년)	비율																																																																																																																																																																																						
에너지 제0등급 건축물	0	0	0	0	0.0																																																																																																																																																																																						
에너지 제1등급 건축물	0	54.5	42.1	11.3	26.1																																																																																																																																																																																						
에너지 제2등급 건축물	0	30.7	26.1	7.2	30.7																																																																																																																																																																																						
에너지 제3등급 건축물	0	6.2	5.9	16.3	2.8																																																																																																																																																																																						
에너지 제4등급 건축물	0	3.2	8.9	1.5	6.2																																																																																																																																																																																						
에너지 제5등급 건축물	0	98.9	93.4	22.8	0.0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0.0	0.0	0.0	0.0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26.1	54.5	42.1	11.3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0.7	35.3	26.1	7.2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6.2	5.9	16.3	2.8																																																																																																																																																																																							
평가	3.2	8.9	1.5	1.5																																																																																																																																																																																							
등급	0.0	98.9	93.4	22.8																																																																																																																																																																																							

--	--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2,893,870,000	VAT 별도
전기감리	(주)한성기술단	₩316,647,045	VAT 별도
정보통신·소방 감리	한국안전기술 주식회사	₩330,000,000	VAT 별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 모든조항은 주택분양보증약관(개정 2019.07.25)을 준용하며, 일부조항은 생략되었습니다.
-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2-101-0005900호	₩326,830,462,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자를 마칩니다.</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줍니다.</p>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위탁사	수탁사	
상호	주식회사 수성의숲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26, 3층 (황금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70111-0721846	110111-3543801	110111-0607618

- 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갑”이 지정·통보하는 예금계좌로 입금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 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와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 ③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④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KCC건설)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하자보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KCC건설)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에게 있다.
- ⑥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⑦ 위탁자 겸 수익자(㈜수성의숲)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

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 겸 수익자(주)수성의숲은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나.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통지

■ **홈페이지** : <http://수성포레스트스위첸.com>

■ **건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8

■ **분양문의** : 053-244-1000

※ 본 건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